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 BNK주주가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li> <li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li> <li>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</li> <li>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</li> </ul>
효 력 발 생 일	2024년 03월 07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#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3.07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,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5. 운용전문인력에	-	-	-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
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오기 정정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증권의 대여 <u>&lt;주식 추가&gt;</u></p> <p>⑤ 증권의 차입 <u>&lt;주식 추가&gt;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 <p>⑧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① ~ 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증권의 대여</p> <p>주2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 <p>1. ETF 매매 편의성 증대: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,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,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,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</p> <p>2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p> <p>3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p> <p>⑤ 증권의 차입</p> <p>주3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p> <p>⑥ ~ ⑦ (현행과 동일)</p> <p>⑧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~ 5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 - <위험 추가>  라. (생략)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라. (현행과 동일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	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2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생략) (2) 주요업무 1) (생략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현행과 동일) (2) 주요업무 1) (현행과 동일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

		<p>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80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aitas.com</u></p> <p>(2) (생략)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	<p>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</p> <p>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	--

**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
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상장폐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상장폐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		<p>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	<p>가.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<u>(생략)</u>--- 합니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10. (생략) (3)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<u>(생략)</u>--- 합니다. 1. ~ 7. (현행과 동일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 10. (현행과 동일) (3) (현행과 동일)</p>

<끝>.